



등록번호	의회사무국-71081
기안일자	2016. 11. 15
등록일자	
공개구분	부분공개(6)

주무관	기획복지 전문위원		의회사무국장		의장
정진형	이남서		X/11/15/2.		(Signature)
연수수행원 3/11/15/2.					
협 조					

- 2016년도 (하반기) 의원 공무국외연수 귀국보고서 -

공무국외 연수결과 보고



연 수 구
의회사무국

- 2016년도 (하반기) 의원 공무국외연수 귀국보고서 -

공무국외 연수결과 보고



의회사무국



목 차



I . 연 수 목 적	4
II . 연 수 개 요	5
III . 추 진 과 제	6
IV . 연 수 일 정	8
V . 참 가 자 명 단	11
VI . 연 수 내 용	12
1. 뉴질랜드 기본현황	12
2. 뉴질랜드 주요도시특성	12
VII . 주 요 연 수 내 용	16
1. 공식일정	16
2. 그 외 뉴질랜드 공식일정 방문	24
VIII . 연 수 성 과	26
1. 뉴질랜드의 사회복지정책 탐구	26
2. 새로운 뉴질랜드의 복지정책	34
IX . 연 수 소 감	47

2016년도(하반기)

공무국외 연수결과 보고서



- New Zealand -
(뉴질랜드)

- New Zealand 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만큼이나 사회복지가 잘 된 나라다.
 겉으로 보기에선 얼마 안 되는 인구(400만명)에 농업이 주요 산업인 국가이지만 국민들에 대한 사회보장제도가 체계적으로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란 문구에서 알수 있듯이 복지국가 뉴질랜드의 복지정책을 알아본다.
- 뉴질랜드는 개인 혹은 가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연금제도와 수당 지급 시스템이 정말 다양하게 현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나라다. 이런 혜택속에는 가정적 목적(배우자의 지원 없이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편 부모에 주는)의 수당을 비롯, 고아, 과부 및 부양자가 없는 아이수당과 같은 부양수당이 있고, 소위 무능력자 수당이라고 하는 시스템에는 노약, 질병, 장애까지 포함하여, 이 들을 위한 주택개조 및 수리를 위한 대출과 자동차 대출도 있다.
- 또한, 뉴질랜드는 다른 나라의 사회보장제도와는 달리 소득지원이 세금으로부터 조달되기 때문에 다른 소득에 대해 일정 수준의 부가세가 징수되나, 개인 노령 연금이나 보험에 들었을 경우 소득의 절반에 대해 부가세가 면제된다.
 퇴역연금은 국가 노령연금과 같은 비율로 지급된다. 직업훈련과 실직을 위해 직업관련 수당이 공급되며, 구직수당이라는 것도 존재한다.
- 뉴질랜드는 이것들 외에도 위치나 환경에 따라 탁아보조프로그램, 장례수당 그리고 재해복구 수당 등이 있다. 수당은 매년 조정되며 대부분 소득여부의 심사를 수행하게 된다. 물론 혜택 중에는 수당을 지급받기 전 대기 기간을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다.

○ 사실, 뉴질랜드의 복지제도는 현지의 담당자들조차도 전체를 꿰뚫을 수 없을 만큼 광범위하고 다양한 루트로 연관되어 있다고 한다. 복지제도라 하면 의료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교육복지 등 복지에 대한 뿌리의 깊이가 상당하다. 그도 그럴것이 사회복지의 대상이 사람임을 감안한다면 사람이 있는 곳은 어느 곳, 어느 분야든 ‘이슈’로서의 복지문제가 충분히 언급 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 이번, 2016. 하반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국외연수는 8박10일간의 일정으로 지구반대편 천혜의 자연조건에 있는 뉴질랜드의 복지정책을 둘러 보고 우리가 사회복지에서 소위 말하는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행복시스템을 점검함으로써, 이를 교훈삼아 기후환경은 뉴질랜드 못지 않은 우리나라 그 속의 우리 연수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Ⅱ 연수개요

○ 일 정 : 2016. 10. 30(월) ~ 2016. 11. 8(토) (8박 10일간)

○ 연수국가 : 뉴질랜드

○ 연수인원 : 4명 【의원 3명, 의회사무국 1명】

- 참여자 명단 : Page 11

○ 소요예산 : 9,500천원(개인부담 별도)

○ 주요 방문일정

연수국가	대한민국	뉴질랜드	뉴질랜드	뉴질랜드	뉴질랜드	뉴질랜드
방문일자	10. 30(일)	10. 31(월)	11. 1(화)	11. 2(수)	11. 3(목)	11. 4(금)
기관방문 등	인천공항 출발	오클랜드 공항 도착	로토루아 시청 방문	오클랜드 시청방문	피요르드 국립공원	퀸스타운 시내 에로우타운
기타방문 등		반딧불동굴 (세계 8대 불가사이)	아그로폴 농장견학	하버브릿지, 미션베이 등	라이언 마운틴, 마이 터피크 등	오마라마갈색 초원구경지대

연수국가 (도시)	뉴질랜드	뉴질랜드	뉴질랜드	뉴질랜드	비 고
방문일자	11. 5(토)	11. 6(일)	11. 7(월)	11. 8(화)	
기관방문 등	마운트록지역 타스만방하	코리안가든 부지방문	타카푸나 구의회 방문	오클랜드 공항 출발	
기타방문 등	크라이스처치 시내견학	코리안가든 임직원미팅	무리와이 철새도래지	인천공항 도착	

III 추진과제

1. 중점 추진과제

구 분	개 요	주 요 내 용
뉴질랜드 사회복지 시설방문 (The Selwyn Foundati on)	 ◆ 취지 : 뉴질랜드의 사회복지시설(기관)을 방문하여 선진국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복지정책을 둘러보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함. (The Selwyn Foundation)	◆ 관계공무원의 브리핑 ◆ 교육 및 사회복지 정책 등 ◆ 구행정 접목할 우수사례 파악 ◆ 대주민 행정서비스 운영실태 ◆ 기타 관심사항 질의 응답 ◆ 사회복지시설 방문 ◆ 공원 및 대성당, 대학교 등 뉴질랜드 도시 인프라 견학 (로토루아, 밀초드사운드, 퀸즈타운, 마운트록, 캔터베리대병원, 오클랜드 등)

2. 기타 추진과제

구 분	개 요	주 요 내 용
뉴질랜드 (아그로돔) 방문	방문취지: 로토루아 시내에서 북쪽으로 약 10 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아그로돔을 방문하여 뉴질랜드의 전형적인 농장의 모습을 견학 하고 19종이나 되는 수양물과 양모의 종류를 알수 있는 양털의 쇼를 관람하는 등 농장의 관광 모델 벤치마킹	- 아그로돔을 방문하여 관광용품 판매 상점 시찰 - 로토루아 도시, 호수, 지열 지대 및 주변관광 인프라 점검
겨울호수 밀포드 사운드 방문	방문취지: 퀸즈타운에서 약 300km 정도 떨어진 밀포드사운드 방하의 흔적을 볼 수 있는 곳으로 '반지의 제왕' 이 이곳에서 촬영된 것으로 유명한 관광지 시찰	- 밀포드사운드 현황 파악 - 관광정책 및 관심사항 등 질의 응답
마운트쿡 국립공원	방문취지: 해발 3,754m의 뉴질랜드 서던 알프스의 최고봉으로서 맑고 깨끗한 하늘과 파란 빛의 아름다운 호수, 만년설의 정상 등 뉴질랜드 국립공원의 백미를 관람	- 시설견학, 실태 파악 - 세계최고의의 국립공원 정책 우수사례 파악 - 기타 관심사항 질의 응답
한국정원 건립단체 코리아가든 트러스트 사무실방문	방문취지: 오클랜드 내 한국정원 건립단체인 코리아 가든 트러스트 사무실 방문 및 견학 코리아 가든 부지 방문 등 간담 시간	- 시설견학, 실태 파악 - 관광선진국에 진출한 한국형 정원기업모델 등 우수사례 파악 - 기타 관심사항 질의 응답

IV

연수일정

2016. 하반기 의원 공무 국외연수 세부 일정

◆ 뉴질랜드 남 · 북섬 8박 10일 일정표 ◆

DATE	LOCATION	TRANS	TIME	ITINERARY	MEALS
제1일 (10월 30일)	인천	KE129	17:00	인천출발 / 오클랜드 향발	D:기내식
제2일 (10월 31일)	오클랜드 와이토모 로토루아	전용차량	8:10 9:10 11:30 12:30 13:30 16:30 18:30	오클랜드 도착 및 가이드 미팅 가이드 미팅 후 세계 8대 불가사의의 하나인 반딧불 동굴로 이동 (소요시간 약 2시간 30분) 수천만년전 용기로 인해 생성된 석회석 동굴 견학 및 와이토모에서만 볼 수 있는 반딧불 견학 (소요시간 약 1시간) 견학 후 Home stead Restaurnat 에서 현지식으로 중식 중식 후 유희와 온천의 도시 로토루아로 향발 (소요시간 약 3시간) 로토루아 도착 후 호텔 체크인 및 휴식 ★YAKI YAKI 레스토랑에서 스카치필레 스테이크 석식★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HOTEL : Sudima hotel Class	조:기내식 중:현지식 석:한식
제3일 (11월 1일)	로토루아	전용차량	8:00 9:00 11:00 12:00 13:30 14:30	호텔 조식 후 ■로토루아 시청 방문 및 공식 일정 ■뉴질랜드 전형적인 농장을 재현한 "아그로돔 농장" 남반구 최대의 양 쇼장에서 양쇼 및 농장 견학 (소요시간 약 1시간) 스카이 라인 곤돌라 탑승 및 뷔페식으로 중식 ■원주민 마오리 생활상을 엿볼수있는 "테푸이아 민속촌" -마오리 원주민들의 생활문화 감상 -마오리 원주민들의 전통가옥과 각종 공예품 관람 -30여 미터까지 치솟는 와까레와레와 간헐천, 진흙열탕 -'와까레와레와'는 마오리 말로 계속 치솟는 물이라는 뜻 견학 후 오클랜드로 향발 (소요시간 약 3시간 30분)	조:호텔식 중:뷔페식 석:한식 +장어구이

	오클랜드		18:00	오클랜드 도착 후 한식으로 석식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HOTEL : Sudima hotel Class	
제4일 (11월 2일)	오클랜드 퀸스타운	전용차량 NZ647	8:00 9:00 12:00 14:35 16:25 17:00 18:00	호텔 조식 후 오전 오클랜드 시청 방문 및 Selwyn Foundation 방문 ■아름다운 요트의 도시 오클랜드 시내관광 -오클랜드의 주요 공원인 마이클 조셉 세비지 수상 기념 공원 -오클랜드 남쪽과 북쪽을 연결하는 오클랜드의 상징 하버 브릿지 -도심속의 해변과 고급 주택들이 즐비한 미션베이 전경 감상 중식 후 국내선 공항으로 이동, 오클랜드 출발 퀸스타운 공항 도착 후 가이드 미팅 숙소로 이동, 호텔 체크인 및 휴식 한식으로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HOTEL : CORONET HOTEL QUEENSTWON CLASS	조: 호텔식 중: 한식 석: 한식
제5일 (11월 3일)	퀸스타운 밀포드사운드 퀸스타운	전용차량	6:00 7:00 13:00 15:30 19:30	호텔 조식 후 남섬의 백미 밀포드 사운드로 이동 (소요시간 약 5시간) ■"피요르드 국립공원" -맑은 수면에 거울처럼 주변의 풍경을 비추는 거울호수 -많은 인력이 동원되어 악천후 속에서도 완공된 호머터널 약1만2천년전 빙하에 의해 형성된 "밀포드사운드" ★현지식으로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선상에서 중식★ ■밀포드 사운드의 관광의 하이라이트 -라이언마운틴과 마이트피크(Mitre Peak)등 기암괴벽 -낙하하는 폭포수를 직접 맛을 수 있는 스틸링 폭포 -만년설이 녹아 형성된 폭포 등 피요르드 해안 퀸스타운으로 귀환 (소요시간 약 4시간) 퀸스타운 도착 후 한식으로 석식 및 호텔 투숙 HOTEL : CORONET HOTEL QUEENSTWON CLASS	조: 호텔식 중: 선상식 석: 한식
제6일 (11월 4일)	퀸스타운 데카포	전용차량	9:00 10:00 13:00 18:00	호텔 조식 후 ■퀸스타운 명소관광 -옛 서부시대의 탄광촌의 정취가 남아 있는 애로우타운 현지식으로 중식 안개 낀 산허리와 눈덮힌 벌판을 감상하며 오마라마 갈색 초원 구릉지대를 경유 데카포 지역으로 이동 (소요시간 약 3시간) 현지식으로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조: 호텔식 중: 피쉬앤칩스 석: 현지식

				HOTEL : Godley Resort class	
제7일 (11월 5일)	데카포 크라이스처치 오클랜드	NZ520	7:00 8:00 11:00 13:00 15:00 16:20 18:00	호텔 조식 후 마운트쿡 지역으로 이동, 뉴질랜드 최고봉인 마운트 쿡 및 만년설 조망, 타스만 빙하 포인트에서 빙하 등 견학 투어 후 캔터베리 대평원을 지나 크라이스처치 방문 (소요시간 약 2시간) 크라이스처치 도착 후 한식으로 중식 후 간단한 시내 관광 관광 후 국내선 공항으로 이동, 크라이스처치 출발 오클랜드 도착 후 가이드 미팅, 시내로 이동 한식으로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HOTEL : Sudima hotel Class	조: 호텔식 중식: 한식 석식: 한식
제8일 (11월 6일)	오클랜드	전용차량	전일	호텔 조식 후 코리안 가든 부지 방문 현지식 중식 중식 후 코리안 가든 임원진 미팅 및 견학 HOTEL : Sudima hotel Class	조: 호텔식
제9일 (11월 7일)	오클랜드	전용차량	전일	호텔 조식 후 타카푸나 구 의외 방문 및 견학 현지식 중식 중식 후 무리wai 철새도라지 방문 및 견학 한식으로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HOTEL : Sudima hotel Class	조: 호텔식
제10일 (11월 8일)	오클랜드 인천	전용차량 KE130	7:00 9:50 17:50	기상 후 공항으로 이동 오클랜드 출발 인천 도착 후 해산	조: 기내식

V**참가자 명단****2016. 하반기 의원 국외연수 참여자 명단**

연 번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1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장	정 지 열	
2	"	운영위원장	이 강 구	
3	"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 준 식	
4	"	수 행 원	하 태 열	

뉴질랜드 기본현황

(2016. 11.)

구 분		뉴질랜드	비 고
면 적(km ²)		270,500km ²	북섬 : 116,000km ² 남섬 : 151,000km ² 주변섬 : 4,000km ² (일본과 비슷)
기 후	연평균 기 온(°C)	북섬 : 16°C 남섬 : 10°C	뉴질랜드는 한국과 계절이 반대다. 12~2월이 여름, 6~8월이 겨울, 온대성기후
	연평균 강우량(mm)	700~1,500mm	
인 구	계(명)	약 400만명	전체인구의 약37% 150만명 오클랜드 거주, 1km ² 당 인구밀 도 약 14명
지 형		남북섬의 총길이 1,600km	마운트룩산 : 3,754m (백두산:2,722m)
정 부 체 제		입헌군주제, 국회는 일원제	의원은 3년에 한번씩 개선
종 교		성공회,장로교, 로마 가톨릭교 등	감리교 신자가 인구 의 약 60%차지
언 어		공용어 : 영어, 마오리어	의사소통 : 영어
통화와 환율		뉴질랜드 달러(N\$)	1N\$=약 818원
표준 전압		230/240V,50/60Hz	별도 아답터 필요

뉴질랜드(NEW Zealand)

주요도시 특성

주요도시	주요도시 설명	관련 사진
오클랜드 (Auckland)	○ 오클랜드는 일종의 광역시로, 노스쇼어, 마누카우, 와이타케레, 가 합쳐져서 대도시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형성된 오클랜드에 뉴질랜드 전체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모여 살고 있으며, 한때 이곳은 뉴질랜드의 수도이기도 했다. ○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요트대회인 아케리카 컵 대회를 두 번 씩이나 개최한 '요트의도시'	
베이 오브 아일랜드 (Bay of Islands)	○ 파이히아와이탕아·러셀·케리케리 네 도시와 인근 150여 개 섬을 묶어서 베이 오브 아일랜드라 한다. ○ 유럽이주민과 마오리 부족간 영토분쟁의 주무대가 되기도 했으며, 영국의 주권을 인정한 와이탕이 조약이 체결된 곳도 바로 여기다. ○ 햇살이 부서지는 코발트빛 바다는 속히 원히 들여다 보일만큼 투명하고, 다이빙포인트와 고래 관찰장소도 있다.	
로토루아 (Rotorua)	○ 뉴질랜드 전역을 뒹뒹여 로토루아만큼 알찬 관광도시는 없다. 아름다운 호수와 울창한숲, 부글부글 살아있는 온천과 마오리의 노랫소리, 양털깎기 쇼와 다양한 액티비티..., '유황의도시' 온천욕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수 있는 최대 관광명소가 즐비하다.	

주요도시	주요도시 설명	관련 사진
타우포 (Taupo)	○ 타우포라는 지명은 뉴질랜드에서 가장 큰 호수 '레이크 타우포' 에서 왔다. 우포호수의 면적은 616km²로, 싱가포르를 뚫째로 집어 넣고도 남을 만큼이라면 넓다. 서울과 부산 사이의 거리가 600km다. 호수 너머로 눈덮인 투아페후 산이 엽서의 한 장 면처럼 솟아 있고, 뚝가리로 국립공원의 장엄한 산들은 병풍처럼 도시를 두르고 있다.	
크라이스처치 (Christ church)	○ 남섬 최대의 도시인 크라이스처치는 정치·경제·관광의 중심지 구실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영국 밖에서 가장 영국스러운 도시', '정원의 도시' 등 도시 한가운데를 흐르는 맑고 찬 에이번 강, 아름다운 공원과 고층스러운 전차, 도시의 상징인 대성당, 고딕풍의 건축물들 그리고 멀리 보이는 서던 알프스의 만년설...,	
퀸스타운 (Queens town)	○ 마치 동화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아름답다. 짙은 초록의 와카티푸 호수, 세계적인 휴양도시 퀸스타운도들과 세계적인 레포츠의 메카로 거듭나고 있다. 여름에는 호수를 따라 래프팅과 제트스키 등을 즐기고, 겨울에는 스키와 스노보드를 즐기기 위해 리마커블스 스키장으로 몰려드는 사람들로 활력이 넘쳐난다.	

주요도시	주요도시 설명	관련 사진
테 아나우 (Te Anau)	○ 남섬의 남서부에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는 피오르드랜드 국립공원은 뉴질랜드 최대의 국립공원, 협만 Sound 14개가 마치 양곱창처럼 구불구불 굴곡을 이룬 피오르드 지형이다. 가장 유명한 곳은 밀포드 사운드와 다웃클 사운드이며, 이들 피오르드 관광의 거점이 되는 곳이 바로 테 아나우다. 도시전체가 높은 산과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다. 빙하가 지면을 잘라낸 곳에 물이 채워져 만들어진 테 아나우 호수는 길이 53km, 폭 10km로 타우포 호수에 이어 뉴질랜드에서 두 번째로 넓으며, 깊이는 가장 깊다.	
더니든 (Dunedin)	○ 크라이스트처치에 이어 남섬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더니든은 오타고 만 깊숙이 요새처럼 은밀하고 요람처럼 아늑하게 자리잡고 있다. 더니든에서 시작해 태평양을 향해 길게 뻗어 나간 오타고 반도는 앨버트로스, 노란눈펭귄, 바다표범 등의 서식지로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다. 또다른 특징은 '대학도시'라는 점, 뉴질랜드 최초의 대학 오타고 대학, 스코틀랜드풍의 석조건물과 지명, 매년 3월 중순에 열리는 '스코틀랜드 위크' 축제등이 유명하다.	

VII

주요연수내용

1. 공식일정

① The Selwyn 방문



Full Company Name:

● Selwyn Village

1953년 초석이 마련된 Selwyn Village는 호스텔형 주택보다는 오두막을 기반으로 노인을 위한 독립적인 생활을 위한 마을로 계획되었다. 뉴질랜드 최초의 은퇴 마을의 하나로서 풍부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현대적인 아파트, 편의시설이 지원되며, 65가지의 독특한 라이프 스타일을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2016. 하반기 연수구의회
연수단 방문 >

(‘16.10.30-11.8)

- 위 치 : New Zealand
- 건설연도 : 1954
- 대지면적 : 26 acre
- 세대 수 : 약 650명
- 운 영 자 : The Selwyn Foundation

● Selwyn Villages 지도



Selwyn Village site diagram



This site diagram includes the approximate location of a future apartment building to be constructed at Selwyn Village. The Selwyn Foundation reserves the right to unilaterally change and alter the location and number of buildings to be constructed on the Selwyn Village land.

● <홈페이지 : <http://www.selwyncare.org.nz>>

[Home](#) [Retirement Villages](#) [Village Locations](#) [Careers](#) [Contacts](#) [About Us](#)

The Selwyn
Foundation



Retirement living

Rest homes and hospitals

Selwyn Day Centres for older people

The Selwyn Centre for Ageing and Spirituality

Donations and Bequests

Management Services

Latest news and updates

Publications

The Selwyn Foundation - for faith in your future



If you love style, comfort, security, quality and genuine care, you will love The Selwyn Foundation's retirement villages.

The Selwyn name is synonymous with some of the most beautiful retirement village locations in the country. These offer true lifestyle - many adjacent to parks, beside the sea, or featuring lush and leafy park-like grounds with mature trees and gardens.

As one of the country's largest, not-for-profit providers of services to the older generation, The Selwyn Foundation is uniquely experienced in independent retirement living, rest home, hospital and dementia care services across nine lovely villages in the upper North Island. For almost sixty years, the Foundation has served older people with integrity, warmth and respect. An originator of retirement villages and rest home care

● <프로그램 &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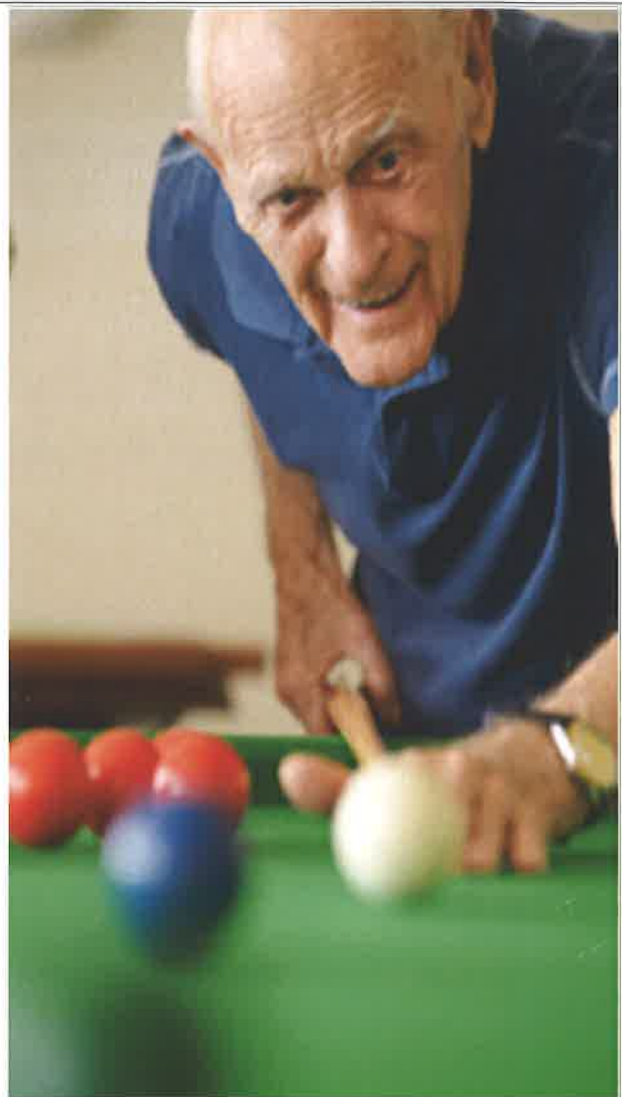
Activities ->

Selwyn 마을자립 주민에게 적극적인 유지학습을 지도하고, 생활을 즐길 수있는 기회를 제공. 직원과 같은 활동을 조직하고 실행하는 활동이 있음. 적극적인 주민협의회를 통한 주민 활동

(speakers, dance groups, entertainers off-site trips and visits crafts and hobbies)

● Services ->

- 식사
- 린넨과 세탁
- 아파트 및 빌라 청소
- handy-man services
- 자동차 운전
- 상점이나 약속에 이용할 수 있는 미니버스 운행
- 가족 모임, 장례식 및 특별한 날에 대한 음식



● <프로그램 & 서비스 : Care Service>

Rest Home Care



Hospital Care



Dementia Care



Dementia Day Care



● <프로그램 & 서비스 : Hospital Care>

● <Sarah Selwyn Hospital>



사라 Selwyn 병원은 현대적인 70개의 침대를 보유한 병원. 모든 객실에는 샤워 시설 등이 갖춰진 싱글이다. 객실에는 햇볕이 잘들어 따뜻하며 Waitemata 항구의 녹색 교외가 내려다 보인다. 외부에 앉아서 햇살을 즐길 수 있는 여러 라운지와, 차와 커피를 즐길 수 있다.

● <Caswell House>



따뜻함, 관심과 친절로 유명한 70개의 침대를 보유한 병원이다. 병원은 2베드룸, 4베드룸 객실뿐만 아니라 공유 ensuite 싱글룸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다. Waitemata의 상류와 Waitakere 범위가 내려다 보이는 멋진 전경을 감상할 수 있다. 병원 주위 대형 정원이 있고 안에는, 여러 라운지뿐만 아니라 차와 커피 메이커를 갖춘 조용한 공간이 있다.

● <프로그램 & 서비스 : Dementia Care>



(Brian Wells Lodge)

전문 치매 치료를 위한
침대안전장치인 브라이언 웰스
룻지를 16개 보유
각 주민은 자신의 싱글 룸이
있으며, 개인용품, TV 등 방을
장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정원을 즐길 수 있는 라운지와
전망대가 있다.

(Facilities and catering)

브라이언 웰스 Lodge의
환경은 치매에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구성이다.
미용실, 족병(足病)치료 사나,
physiotherapist, 치과, 안경점
또는 의사와의 약속을
예약할 수 있다.
특별식단은 자격을 갖춘
영양사로부터 제공받는다.
화재경보기 및 스프링 쿨러가
장착마을 목사님이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상담 및 지원 가능
스탠다드룸 기능: 표준 침대
/ 공용 욕실

● <프로그램 & 서비스 : Dementia Day Care>



Lavender Cottage라는 이름을 가진 센터로 치매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개인치료를 해 준다. 16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

센터는 실제 집처럼 느낄 수 있도록 지어졌다.

정원에서 야채와 꽃을 제배하고, 음식 준비를 돕고 요리를 하는 등 라벤더 코티지에서 일상 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환자로서가 아닌 가족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대우하는 접근방식으로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한다.

2 그 외 뉴질랜드 공식일정 방문

[로토루아 시청방문]

- 방문일시 : 2016. 11. 01(화) 09:00 ~ 10:00
- 방문장소 : 뉴질랜드 오클랜드 로토루아시청 방문(로토루아City)
- 참 석 자 : 연수단 일행 전원
- 기념품전달 : 시계
- 관련사진



[Selwyn Care Visiting : 셀윈 요양병원]

- 방문일시 : 2016. 11. 02(수) 09:30 ~ 10:30
- 방문장소 : 뉴질랜드 오클랜드 양로원 복지시설 및 병원, 케어 센타 방문
- 참 석 자 : 연수단 일행 전원
- 기념품전달 : 시계
- 관련사진



[코리안 가든 부지 방문]

- 방문일시 : 2016. 11. 02(수) 09:30 ~ 10:30
- 방문장소 : 한인회가 중심이 되어 뉴질랜드내에 한국식 정원 조성 계획 부지 방문(대표 : 이윤희 회장, 총무 : 조병희이사 등)
- 참 석 자 : 연수단 일행 전원
- 관련사진

건립계획 부지	건립계획 설명
	

[타카푸나 구의회 방문]

- 방문일시 : 2016. 11. 07(월) 09:00 ~ 10:00
- 방문장소 : 뉴질랜드 오클랜드 타카푸나 구의회 방문
- 기념품전달 : 시계
- 참 석 자 : 연수단 일행 전원
- 관련사진

방문 기념사진	현황파악 및 대화시간
	

<뉴질랜드의 사회복지정책 탐구>

1. 국가 개관

- 수 도 : 웰링톤(Wellington)
- 면 적 : 268.105Km(한반도의 1.2배 / 남한의 2.7배)
- 인 구 : 약 400만명
- 기 후 : 온대성기후
- 강수량 : 700 ~ 1,500mm 정도
- 민 족 : 영국, 아이리시혈 통의 유럽인가 아시아인, 마오리족
- 언 어 : 영어, 마오리어
- 종 교 : 기독교(성공회 25.7%, 장로교 16.5%, 카톨릭 14.4%)
- 정치체제 : 입헌군주제
- 정부형태 : 내각책임제, 중앙정부, 지역정부, 지방정부로 구분
(지역정부는 여러 개의 지방정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우리나라의 시도에 해당)
- 의회제도 : 하원만 있는 단원제

2. 사회보장 체계

- 노령·장애·유족급여에서 뉴질랜드 퇴직연금(New Zealand Superannuation)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재원은 전액 국가의 일반재정에 의해 충당되는 수당 방식으로 운영되며, 퇴직급여의 부가급여와 장애연금, 유족연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주민에게 자산조사를 거쳐 지급되는 사회부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질병·출산급여에서 질병급여의 현금급여(Cash benefits)는 일정소득 이하의 피고용자를 의료급여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출산급여는 일정 소득 이하의 독신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됨.
재원은 전부 국가의 일반재정에서 충당됨. 따라서 질병급여의 현금급여와 출산급여는 사회부조 방식으로, 의료급여는 수당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노동재해급여는 국내의 모든 피고용자와 해외에서 노동재해를 입은 뉴질랜드 국민까지 대상으로 함. 재원은 고용주가 사고의 내용에 따라 기여를 하며, 정부는 의료비용을 부담하는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실업급여는 연금 수급자와 학생을 제외한 일정소득 이하의 피고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재원은 전부 정부의 일반재정으로 충당되는 사회부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가족급여는 가사급여(domestic purpose benefit), 장애아동급여, 가족부조가 시행되고 있으며, 가사급여는 종일 아동을 돌보아야 하는 편부모에게 지급되며, 장애아동급여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장애를 가진 아동을 집에서 돌보는 경우에 지급되며, 가족부조는 부양아동이 있는 저소득 근로자와 모든 사회보장 수급자에게 주어짐. 재원은 모두 정부의 일반재정에서 충당되며, 가족부조는 사회부조 방식으로 나머지는 수당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3. 사회보장 운영 체계

- 뉴질랜드의 보편적인 공공부조는 Income Support Service이며, ISS는 사회복지부(Department of Social Welfare)의 뉴질랜드 소득보장서비스(New Zealand Income Support Service : NZISS)라는 중앙사무소와 전국 90개의 지역사무소를 통하여 운영되고 있음.
- 사회복지부는 2001.10.1. 사회개발부로 개편되어 소득보장과 고용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2001년 10월 1일에 설립된 사회개발부는 뉴질랜드 정부에 사회정책을 제공하고, 100만 이상의 뉴질랜드인에게 소득지원과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사회개발부의 정책에 대한 집행 즉 서비스의 제공은 work and income이라는 부서에서 수행을 하고 있음.
- work and income은 정부를 대신하여 소득지원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쟁연금, 주택보호, 보조금지원, 퇴직수당 업무도 관장을 하고 있음. 또한 community services card, 학생을 위한 대부 및 수당지원, 국제문제 등도 수행하고 있음.

4. Income Support Service(ISS, 공공부조)

(1) 개 요

- 뉴질랜드의 사회보장제도는 오스트레일리아와 마찬가지로 노동재해급여를 제외하고는 보편적인 사회부조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자산조사하는 보편적인 사회부조프로그램은 income Support Service임.
- ISS의 대상은 1994년 현재 85만명으로 전국민의 1/4인 25%를 넘고 있으며, 급여의 종류로는 노령.장애.유족급여.질병.출산급여.실업급여와 가족급여가 있음.

- 노령급여는 1898년 이후부터, 과부급여는 1911년 이후부터, 맹인급여는 1924년 이후부터, 장애급여는 1936년 이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질병·출산급여는 1938년 이후부터, 실업급여는 1930년 이후부터, 가족급여는 1926년 이후부터 시행되고 있음.
- 노령급여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일반적인 자산조사는 실시하지 않으나, 연령에 따른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소득조사를 실시함.
- 장애급여는 16세 이상의 영구·중증 장애이거나 맹인을 대상으로 하며, 최근 10년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맹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조사를 실시함.
- 유족급여는 특정 유형의 과부와 고아를 대상으로 하며, 3년에서 5년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소득조사를 실시함.
- Income Support는 국가 최저기준을 기준으로 소득과의 차이를 지원하는 보충급여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근로가 가능한 경우에는 노동과 연계하여 지원
- 수급자에 대한 자산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금융 등 모든 소득정보는 국세청으로 자동 연결되어 있으며, 수급자격 유무, 지원액 등의 결정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는 체계로 구축되어 있음.
- 소득파악을 위한 전국 단일의 DB가 구축되어 있음.
-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때에는 경고, 처벌, 환수 등 법적조치를 취하고 있음.

(2) 주요내용

(가) 연금

○ National Superannuation(노후연금)

- 1994년 4월 1일 이후 만 61세 이상이면 수혜대상임.
- 2001년 4월 1일부터는 만65세가 되어 수혜자격 부여
- NZ 영주권 자로서 20세 이후의 나이에 적어도 10년을 뉴질랜드에 살았어야 하며, 그중 5년은 50세 이후 뉴질랜드에 거주했어야 함.

○ Fifty-Five Plus Benefit

(55세 이상으로 노후연금 수당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노후연금 대상자가 되기 전에 현직에서 은퇴한 경우
- 55세부터 실업자가 되었을 경우

(나) 각종 수당

○ Unemployment Benefit(실업수당)

- 계속 직업을 찾고 있으나 아직 직업이 없는 경우
- 18세 혹은 그 이상의 나이
- 노후연금 자격은 안 되고 직업이 없는 경우
- 16세,17세로서 결혼 후 어린이가 있는 경우
- NZ 영주권 자로서 2년 이상 계속 살고 있는 경우
- 수당을 신청하기 전에 NZ Employment Service of the Department of Labor에 직업을 찾고 있다는 등록 신청을 해야 함.
- 아래의 경우에는 수당 자격을 불인정함.
 - 별다른 이유 없이 직장을 사직한 자
 -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나 2회 이상 거절한 자
 - 직장 알선 interview 약속을 2회 이상 지키지 못한 자
 - 전 직장에서 주급 399불 이상 받은 자

○ ORPHANS BENEFIT(고아수당)

- 양육자(보호자)에게 16세가 될 때까지 지급. 만일 어린이가 학교에 계속 다닌다든지 신체상 문제로 돈을 벌 수 없는 경우에는 18세까지 연장됨.

○ DEMEDTIC PURPOSES BENEFIT(DPB, 생계보조수당)

- 홀부모인 경우(A soloparent)
- 여자 혼자 사는 경우(A woman alone) : 50세 이상의 여인이 혼자 사는 경우
- 병자 간호의 경우(A person caring for the sick at home) : 병자가 남편이나 부인이 아닌 경우에 병자를 돌보는 경우

○ INVALIDS BENEFIT(환자 수당)

- 장기치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지급되는 장기적인 수당

○ SICKNESS BENEFIT(병가 수당)

- 병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일할 수 없는 사람에게 한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 DISABILITY ALLOWANCE(장애자 수당)

- 장애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 WIDOWS BENEFIT(과부 수당)

- 자녀 수에 따라 차등이 있으며 가족수당들 다른 수당도 추가 지급됨.

○ YONTH BENEFIT(청년 수당)

- 부모를 떠나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16-17세 젊은이에게 주는 수당

○ EMERGENCY BENEFIT(응급 수당)

- 학생수당의 자격은 안되지만 꼭 도움이 필요하고 도저히 본인이 해결할 수 없을 때 Social Wefare에서 재정상황을 자세히 검토 후 보조

○ Student Allowance(학생 수당)

- NZ정부가 인정하는 학교의 Full Time 학생의 생활비 보조수당
- 나이 16세이상
- 학교 : 대학교, 전문학교, 교육대학교
- NZ시민권자, 영주권자
- 시간 : Full Time으로 12주이상 주 20시간 이상 수강
-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함
- 25세 이하의 학생은 부모의 소득여하에 따라 차등 지급
- 다른 어떤 Social Welfare Benefit를 받는 경우는 제외
- 각각 개인의 처한 상황에 따라 수당금액도 다름
- 뉴질랜드 2년 이상 거주한 자

○ Family Support(가족 수당)

- 저소득 가정에 지급되는 자녀양육 보조금으로 조건만 되면 받을수 있음.
- 신청자격 : 뉴질랜드 영주권을 가지고 1년이상 거주한 자로서 부모의 연간 소득이 NZ Income Support Service에서 정한 일정한 수준 이상을 넘지 않으며, 18세 이하의 부양 자녀를 가진 자
- 신청방법 :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매년 2월 말까지 신청을 갱신하여야함. 신청시에는 Inland Revenue Office에 가서 Family Support를 작성하든지, 발송하면 됨.
- 구비서류 : 기혼자는 배우자의 서류도 갖추어야 함.
 - 영주권 증명서(여권)
 - 은행거래증명서(bank statemen, bank book)

- 소득증명서(투자, part time 포함 직업, 자영업, ACC소득)
- 자산증명서
- 출생증명서(한국인의 경우 영문가족관계등본)
- IRD Number(Tax return package나 세무서의 IRD Number 통지 공문)(납세번호)
- 주거비 입증서류

○ 기타 : 직업훈련 보조수당, 양로원수당, 주거수당, 사망보조수당 등

(3) 각종 수당을 신청하는 방법

- NZ Income Support Service 또는 IRD(Income revenue department,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고, 은행통장을 제시

<새로운 뉴질랜드의 복지정책>

Welfare-to-Work 정책

(1) 개 요

○ 최근 뉴질랜드의 사회복지정책은 ‘Welfare-to-Work’ 개념으로의 근본적인 변화를 하고 있음. 비록 근로조건에 대한 요구가 실업급여 등 기존의 제도에 존재했었지만, 최근 들어 더욱 폭넓게 강화되어 적용되고 있음.

이러한 뉴질랜드의 정책적 변화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 첫째 : 수급자들이 가능한 빨리 근로활동을 시작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그들이 제공받는 급여 및 지원에 대하여 요구되는 수준이 더욱 강화되고 있음.
- 둘째 : 수급자들로 하여금 근로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재정적 유인책들이 강화되고 있음.
- 셋째 : 수급자들이 일자리를 구하는데 있어서 유리하도록 다양한 차원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강화되고 있음.
- 넷째 : 위의 변화를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행정조직 및 기구들을 재편했음.

(2) 이전의 대응 전략

○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의 실업률 증가에 대한 뉴질랜드 정부의 대응전략은 다음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

- 하나는 정치적으로 난처한 상황을 만든 실업자 수를 해소하는 것이고
- 다른 하나는 실업급여 수급자 수의 증가로 인해 증가되는 소득보장 프로그램의 지출을 제한하는 것이었음.

○ 이와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뉴질랜드 정부가 초기에 사용했던 접근 방식은 다음의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음.

- 첫번째는 가장 근본적인 접근방식으로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업자들을 흡수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창출(Job Creation)하고,
- 두번째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소득보장 프로그램의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일련의 비용을 제한(Cost-containment)할 수 있는 정책수단들을 시행하며, 구체적인 정책수단으로는 급여 대기기간의 연장, 급여 자격의 축소, 급여율의 축소 등이 있음.
- 세번째는 수급자들을 급여대상으로부터 고용 또는 근로활동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전형적인 Welfare-to-Work 프로그램들을 시행하는 것이었음. 대표적인 프로그램의 예로 1987년 도입된 'Transition to Work Allowance'를 들 수 있음.

(3) 소득보장 프로그램의 최근 경향

○ 1992년에 11.1%로서 최고에 이르렀던 뉴질랜드의 실업률은 그후 3년간 매년 약4.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면서 1996년에는 6.2%로 2000년에는 5.9%로 회복되었음.

- 그러나 감소하는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소득지원을 받는 전체 대상자는 질병급여(sickness benefit)와 장애급여(invalid benefit), 그리고 주로 편부모들이 받는 'Domestic Purpose Benefit'에 의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음.
- 이러한 이유로 인해 정부의 정책적 관심이 이전에 실업률을 낮추는 방향이었던 반면, 점차 복지 의존(welfare dependency)이라는 폭넓은 이슈로 옮겨가게 되었음.

○ 또한, 1990년대 중반 뉴질랜드 정부는

- 첫째, 실업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1995년 이후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점,
- 둘째, 실업률이 감고했던 시기에도 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는 점,
- 셋째, 기술수준이 뒤떨어지고, 근로습관이 사라지며, 일자리를 찾으려는 동기가 희미해지기 때문에 상당한 비율의 사람들이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하는데 점점 더 어려움을 가지게 되어 장기간 급여대상으로 남아있게 된다는 점,
- 넷째, 급여에 대한 의존적 성격이 특정집단, 특정지역, 특정세대에게 집중적으로 나타난다는 점,
- 다섯째, 급여에 대한 의존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정신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경험을 제공하며, 의존수준의 증가는 국가적으로 사회의 분화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가 가능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소득보장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음.

(4) 복지에 대한 새로운 관점

○ Welfare-to-Work의 개념을 중심으로 한 복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은 최근 뉴질랜드의 복지개혁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원조를 제공한다는 복지체계의 핵심적인 목표는 그대로 존재하지만, 새로운 관점은 소득보조를 받는 사람들이 그들이 받은 지원에 대한 대가로 가정되는 의무, 특히 가능한 빨리 근로활동을 시작해야 한다는 의무의 성격을 새롭게 강조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음.

○ 이와 같은 복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기초가 되는 가정들은 다음의 다섯 가지로 제시될 수 있음.

- 첫째, 노동은 개인과 그들의 가족을 위해 경제적, 사회적인 혜택을 가지는 중요한 규범이다.
- 둘째, full-time은 아닐지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 셋째, 의학적으로 일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이나, 취학전 아동을 가진 편부모의 경우를 포함해서 일부 수급자들은 근로에 참여해야 한다고 기대되어서는 안 된다.
- 넷째, 대다수를 차지하는 다른 수급자들은 일을 할 수 있고, 일자리를 찾기 위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
- 다섯째, 대다수의 수급자들에게 있어서 일자리가 없는 동안에는 일시적으로 소득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 이와 같이 복지에 대한 새로운 관점에 나타난 근로에 대한 강조는 전반적인 소득보장 체계의 계획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복지 체계의 각 구성 요소들은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게 되었음.

(5) 최근의 복지정책

○ Welfare-to-Work의 개념을 중심으로 뉴질랜드에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복지개혁의 내용은 다음 네 가지의 범주로 구분할 수 있음.

- 첫째, 가장 강조되고 있는 영역으로서 ‘상호간의 의무’라는 관점을 중심으로 하는 수급자에 대한 목표수준의 강화
- 둘째, 수급자들로 하여금 급여대상에서 벗어나 근로하도록 유인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의 확대,
- 셋째, 수급자들이 일자리를 구해서 근로하도록 하는 것을 다양한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의 개발,

- 넷째, 이러한 정책적 변화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조직과 제도 등의 인프라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음.

(가) '상호간의 의무'개념에 기초한 수급자에 대한 목표설정

○ 역사적으로 1970년대 중반까지 뉴질랜드의 소득보장 프로그램은 수급자격을 증명하는 것을 제외하면, 거의 수급자에 대해 기대되는 목표수준을 부여하지 않았음.

- 일단 수급자로 등록되면, 거의 수급자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음.
-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다른 프로그램은 수급자들로 하여금 급여대상에서 벗어나 고용상태로 전환하도록 만드는 것을 강조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실업급여 대상자에 대한 근로능력 평가도 형식에 지나지 않았음.

○ 그러나, 점차 장기적인 급여의존 비율은 증가했고, 급여의 수준이 높아졌음.

- 이에 대해서 정책결정자들은 재원이 충분하지 않다는데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수급자들이 어떤 경로에 의해서 급여대상자에서 벗어나게 되는가에 관심을 기울일 수 밖에 없었음.
- 이러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상호간의 의무(reciprocal obligation)'라는 개념이 제기되었음.

※ "상호간의 의무란, 복지급여의 수급이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고, 복지에 대한 의존을 최소화시키고, 개인과 지역사회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책임을 발생시킨다는 생각'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 특히, 강화된 근로조건을 의미하는 '상호간의 의무'에 대한 강조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왔음.

1) Work Test의 강화

- o Work Test는 적절한 일을 할 수 있고, 일하려는 의지는 가지고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또한 구직을 위한 적절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 o Work Test의 성격은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1970년대 후반까지는 실업자 수가 많지 않았고 일자리도 풍부했기 때문에 수급자들에게 다른 의무를 부여하지 않았음.
- 그러나, 최근에는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고 실업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Work Test가 강화되었음.

2) Work Test 적용대상의 확대

- o 복지개혁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중 하나는 더 많은 범위의 수급자들을 Work Test의 적용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임.
- 즉, 기존과 같이 실업급여 수급자로 Work Test의 대상을 한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근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에 있는 광범위한 수급자집단에 적용시키는 것으로 변화한 것임.
- 이것은 소득보장 프로그램에 있어서 전반적인 복지의존 비율을 낮추기 위한 것이며, 실업자들에게만 Work Test를 적용했던 기존 정책들의 실패에 기인한 것임.
- o Work Test 대상자의 확대로 인해 새롭게 적용을 받게 된 집단은
 - 첫째, 실업급여 수급자의 배우자
 - 둘째, 연령이 높은 아동을 가진 편부모
 - 셋째, 이전에 질병급여와 장애급여의 자격을 가졌던 사람들임.
 - 특히, 편부모의 경우 두 단계로 확대되었는데, 1997년에는 14세 이상의 아동을 가진 경우 part-time 일자리를 찾거나, part-time의 교육 훈련을 받아야 했고, 7세 이상의 아동이 있는 경우, 매년 한 차례씩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했음.

- 그러나, 최근에는 다시 6 ~13세의 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part-time 일자리를 찾아야 하고, 14세 이상의 아동을 가진 경우에는 full-time의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것으로 강화되었음.

3) 장애와 질병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근로능력 평가

- o 장애와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서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은 새롭게 Work Test를 받아야 하는 집단들 중 하나임.
- 이들에 대한 Work Test 과정은 전문가들에 의해 수행되며, 전문가 급여대상자가 일을 할 수 있다고 기대되는 시간을 ① 주당 15시간 이하, ② 주당 15~30시간, ③ 주당 30시간 이상의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있음.
- 근로능력에 대한 사정 결과 주당 30시간 이상 일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은 full-time의 일자리를 찾아야 함.
- 그러나, 이러한 사정 결과는 또한 수급자가 성공적으로 근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지원을 받아야하는가를 결정할 때에도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음.

4) 근로 요건(Work Requirement) 불이행에 대한 제재

- o Work Test의 강화는 근로요건을 따르지 않을 경우 적용되는 급여제한 등의 제재조치의 강화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음.
- 이는 적절하게 제공된 일자리의 거부, 근로능력평가, 구직활동, 근로 경험, 직업상담 등의 계획된 활동에 불참하거나,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자발적인 실업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해 적용되고 있음.
- o 또한, 이렇게 제도에 순응하지 않는 경우가 반복해서 발생할 경우에는 가중되어 적용되는 데,
- 예를 들면, 적절하게 제공된 일자리를 처음으로 거부했을 경우에는 다시 이를 받아들일 때까지 최소 1주일 동안 급여가 중지됨.

- 그러나, 두 번째 이를 거부했을 경우에는 13주까지 중지될 수도 있음
다만, 아동을 가진 편부모에 대해서는 이 기간 동안에도 50%까지만
중단시킬 수 있음.

5) Community wage work의 제공

- o 최근의 개혁에서 나타난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근로연계 복지급여의
개발과 재구조화임.
-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1998년 10월 도입된 'Community Wage Pro
gam'을 들 수 있는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로 하여금 기술수준
을 유지하고, 자신감을 가지도록 지원하며, 고용기회를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여 Community Wage Work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또한, 이 프로그램은 기존에 Work Test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질병
급여 수급자들도 Community wage work에 대한 근로능력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o 이러한 Community wage work의 제공은 자원봉사기관, work trust
등 후원조직이나 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며, full-rate로 Community
wage를 받을 경우에는 주당20시간, 부분적인 Community wage
work에 참가해야 함.

(나) 근로유인의 제공

- o 수급자로 하여금 수급대상에서 벗어나 일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 수급
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목표수준을 강화하는 것은 'Welfare-to-work'
의 한 부분에 불과함.
- 또한, 이러한 방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저임금 노동을 강제한다는 점
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음.

- 따라서, 최근의 정책적 접근은 일을 하도록 유인하는 재정적 지원과 근로활동을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수익률을 높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이러한 관점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구체적 프로그램이 제안되고 있음.

1)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부담의 축소

- o 뉴질랜드에서는 1996년부터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예를 들면, 모든 수급자들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를 주당 \$85까지 확대하였고, 편부모나 장애인, 만성질환자 같은 특정 집단에 대해서는 주당 \$85~\$200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 급여감소율을 70%에서 30%로 낮추었음.
- 이러한 조치는 편부모나 장애인들의 유효 한계세율(the effective marginal tax rate)을 감소시킴으로써 시간제 근로활동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익률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를 인식한 사람들로 하여금 시간제일지라도 근로활동을 시작하도록 만드는 유인 효과를 가져왔음.

2) 근로활동을 하는 가구에 대한 급여

- o 또 하나의 프로그램으로서 아동을 데리고 전일제 근로활동에 종사하는 가구에 대한 세액공제(tax credit)제도가 1986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이것은 최근 미국의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근로소득 공제)와 유사한 FTC(Family Tax Credit)로서 다시 정립되었음.
- 이 제도의 목표는 근로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 최저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하고, 급여수준과 근로소득간의 관계에서 근로활동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기 위한 것임.

- 자격조건으로 편부모의 경우 최소한 주당 20시간 이상의 근로활동이 요구되며, 부부의 경우에는 주당 총30시간 이상의 근로활동에 참여해야 함.
- 1996년에는 급여를 수급하지 않는 일반 저소득 가구에 대해 적용되는 IFTC(Independent Family Tax Credit)도 시행되었음.

3) 기본적인 급여수준의 축소

- o 급여의 수준을 낮추는 것도 수급자들로 하여금 근로활동에 대해 고려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경제적인 유인구조를 변화시키는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급여수준의 삭감은 경제상황의 악화라는 요인으로부터 제기된 것이지만, 수급자들이 급여를 받는 대신에 근로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경제적 유인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수준과 급여수준의 차이를 더 크게 만들어야 한다는 원리가 고려된 것임.

(다) 근로활동으로의 전환에 대한 지원

- o 뉴질랜드의 복지개혁에 있어서 세 번째로 중요한 접근방식은 수급자들이 급여를 수급하는 것으로부터 근로활동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시행하는 것임.
- 이것은 수급자들이 적극적으로 구직해야 한다는 의무와 근로활동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경제적 유인효과를 가진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더라도 그들이 고용을 위해서 준비하고 적절한 고용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음.
- o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은 다음과 같음

1) 사례 관리(Case Management) 프로그램

- 사례관리 프로그램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시행되고 있는데,
 - 하나는 'Customised Service'임. 이 프로그램에서는 각 수급자들이 그들의 고용과 관련된 계약이나 지원에 대해 책임을 지는 개별적인 사례 관리자와 연결되는데, 이들과의 1대1 관계를 통해서 고용이나 궁극적인 자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고용에 대한 장애요인을 확인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직업훈련이나 교육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짐.
 - 다른 프로그램으로는 1980년대 후반의 편부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와 편부모에 대해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취업할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지원하는 호주의 JE(Jobs Education and training) 프로그램의 영향을 받아 편부모만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는 'Compass'가 있음. 단, 이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는 수급자가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2) 인적자본 개발 프로그램

- 사례관리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수급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쟁에서 성공적으로 고용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장애요인에 대한 확인과 이를 극복하도록 지원하는 것이었음.
 - 그 중 수급자들의 기술이나 능력의 부족은 근로활동을 어렵게 하고 장기적으로 복지에 의존하도록 만드는 중요 요인 중 하나임.
 - 따라서, 뉴질랜드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급자들에게 기술훈련을 위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쟁력을 가지도록 만드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
 - 이러한 프로그램으로서 대표적인 것에는 실업자들의 기술능력 향상을 위해 1987년부터 시행되었던 'ACCESS'와 1993년에 이를 대체해서 시행되고 있는 'Training Opportunities Programme(TOP)'가 있음.

3) 고용연계(Job Matching) 및 구직활동 지원(Job Search Services)

- 수급자들의 취업을 위해서 극복해야 하는 또 다른 장애요인으로 고용기회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을 들 수 있음.
- 따라서 뉴질랜드 고용서비스의 주요기능 중 하나는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수급자들을 적절한 일자리에 연결시켜 주는 것(Job search service & Job Matching)임.
- 즉, 구직자에게는 'Job Bank'를 통해서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사용자에게는 'Talent Bank'를 통해서 구직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적절한 기관에 대해 구직자들을 연결시켜주거나,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기회나 근로경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연계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4) 근로 경험(Work Experience) 프로그램

- 많은 구직자들은 기술이 부족하거나 오랜기간 노동시장으로부터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을 가지게 됨.
- 따라서, 이들이 취업을 위해 노동시장에 진입하기전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고, 근로활동에 대한 적응을 위해 사전에 근로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1998년 10월 도입된 'Community Wage Work' 프로그램도 일종의 근로경험을 미리 제공하는 것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음.

5) 임금 보조 프로그램

- 실업자들을 사용하기에 직접 연결시키거나, 사용자들에게 제공되는 구직자의 기술을 향상시키는 방법 이외에도 사용자들로 하여금 복지급여 수급자들의 고용을 증가시키도록 경제적인 유인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인 'Job Plus Scheme'가 시행되고 있음.

- 이 프로그램은 구직활동에 있어서 불리한 사람들 특히, 26주 이상 장기간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주 대상으로 해서 사용자가 이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할 경우 6개월이나 1년 동안 이들에 대한 임금을 보조하는 'Job Plus Asset'과 특정한 일자리에 고용하기 위한 교육기간 중의 임금에 대해서 보조하는 'Job Plus Training'으로 구성되어 있음.

(라) 제도적 환경의 개혁

- o 'Welfare-to-Work'을 지향하는 복지개혁에 있어서 앞서 살펴본 세가지 접근방식의 정책적 변화들은 전달체계의 효율적인 개선과 함께 이루어져야 최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o 뉴질랜드에서 고용정책은 노동부(NZES; New Zealand Employment Service)에서, 소득보장정책은 사회복지부(IS; Income Support)에서 담당해왔음.
- o 그러나 Welfare-to-Work에 대한 강조는 이러한 업무의 구분을 무의미하게 만들었고, 전달체계의 효율성이란 관점에서 부처별로 분리되어 있는 체계가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 되었음.
- o 이에 대해 뉴질랜드정부는 1998년 10월부터 NZSE와 IS를 'WINS(Work and Income New Zealand)'란 단일 조직으로 통합하여 관련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복지대상자의 급여와 이를 위해 필요한 근로요건의 적용, 교육 및 직업훈련, 구직활동 지원 등 각종 프로그램에 의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이번 2016. 하반기 의원 국외연수는 책에서만 배우는 것보다 현지에 가서 선진국 뉴질랜드의 복지정책을 좀 더 깊이 있게 관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뉴질랜드 현지 분들과 소통하고 애로사항도 청취함으로써, 보다 더 발전적인 연수구 복지정책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 또한, 이번 의원 연수를 통해서 아직 힘겹기 만한 우리 구 복지정책의 보완책 등도 마련하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 이와 아울러, 선진국의 사회복지시설인 양로원 등을 방문하여 운영실태와 현황 등을 비교 시찰하였던 점 등은 매우 뜻깊고 복지행정에 보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